

개정 2022. 6. 14.

定 款

財團法人 澗松學術獎學財團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目的)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과 학술연구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名稱) 이 법인은 『재단법인 간송학술장학재단(澗松學術獎學財團)』이라 한다.

제3조 (事務所의 所在地)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 2022.6.14.>

제4조 (事業)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로 다음의 목적事業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학술연구비 지급

제5조 (法人供與 利益의 受惠者) 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事業 遂行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差別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 (財産의 區分)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구분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으로 하고, 基本財産 이외의 일체의 財産은 普通財産으로 한다.

1. 設立時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財産
2. 寄附에 의하거나 기타 無償으로 取得한 財産
다만, 寄附목적에 비추어 基本財産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普通財産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編入할 것을 의결한 財産

4. 歲計剩餘金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設立 당시의 基本財産은 別紙目錄 1과 같다.
2. 現在의 基本財産은 別紙目錄 2와 같다.

제7조 (財産의 管理) ① 제6조 제3항의 基本財産을 賣渡, 贈與, 賃貸, 交換 또는 擔保에 제공하거나 義務負擔 또는 權利를 拋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에서 買受, 寄附採納, 기타 방법으로 財産을 取得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하며, 기부금 모집실적이 있을 때에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 4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基本財産 및 普通財産의 維持, 保存 및 기타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基本財産의 目錄이나 評價額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別紙目錄을 변경하여 定款變更節次를 밟아야 한다.

제8조 (財産의 評價) 이 법인의 모든 財産의 評價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再評價를 실시한 財産은 評價價額으로 한다.

제9조 (經費의 調達方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經費는 기본재산의 果實, 事業收益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會計의 區分) ① 이 법인의 회계는 目的事業 會計와 收益事業 會計로 구분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 課稅 對象이 되는 收益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收益事業會計로 計理하고, 기타의 收益과 費用은 目的事業會計로 計理한다.

③ 제 2 항의 경우에 目的事業會計와 收益事業會計로 구분하기 곤란한 費用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法人稅에 관련 법령의 規定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會計原則) 이 법인의 會計는 事業의 經營 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會計 去來 發生의 事實에 의하여 企業會計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會計年度)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政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豫算外의 債務負擔等) 예산외의 債務의 負擔 또는 債權의 拋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當該 회계 연도의 수입금으로 償還할 수 없는 資金을 借入(이하 “長期借入金” 이라한다) 하는 경우, 借入하고자 하는 長期借入金이 基本財産 總額에서 借入 當時의 負債總額을 控除한 長期借入金額의 總額이 100만원 未滿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任員의 報酬 制限 등) 제 17조 규정에 의한 常任理事를 제외한 任員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實費의 報償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任員 등에 대한 財産貸與禁止) ① 이 법인의 財産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正當한 代價없이 이를 貸與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任員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親族關係에 있는 자 또는 이에 該當하는 자가 任員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財産上 密接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正當한 代價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 (任員의 種類와 定數)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種類와 定數는 다음과 같다.

1. 理事 5인
2. 監事 2인

② 제 1항 제 1호의 理事에는 理事長을 包含한다.

제17조 (常任理事) ① 제 4조에 규정한 사업을 專擔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任員의 任期) ① 理事의 任期는 4년, 監事の 任期는 2년으로 한다.

② 補選에 의하여 就任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 (任員의 選任方法) ① 理事와 監事は 이사회에서 選任하여 監督廳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任期前의 任員의 解任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③ 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제20조 (任員 選任의 制限) ① 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理事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特殊關係에 該當하는 理事의 數는 제 16조의 理事 定數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監事は 監事 相互間 또는 理事와 제 1항에 규정한 特殊關係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理事長의 選出方法과 그 任期) ① 理事長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 ② 理事長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理事長 및 理事의 職務)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代表하고 법인의 업무를 總理한다.

- ②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審議 決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委任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理事長의 職務代行) ① 이사장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指名하는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 ② 이사장이 闕位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理事의 선출은 理事會에서 理事 定數의 過半 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理事長 職務代行者로 選出된 理事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監事の 職務)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財産 狀況을 監査하는 일
2. 이사회 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監査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是正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出席하여 의견을 陳述하는 일

6. 이사회회의 會議錄에 記名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회의 機能) 이사회회의는 다음 사항을 審議하여 決定한다.

1. 이 법인의 豫算, 決算, 借入金 및 資産의 取得 處分과 管理에 관한 사항
2. 定款의 改定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解散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任免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規程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運營상 重要하다고 이사회장이 附議하는 사항

제26조 (議決 定足數) ① 이사회회의는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한다

② 이사회회의의 의사는 출석이사회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③ 이사회회의의 의결은 대한민국 國民인 理事가 出席理事 過半數가 되어야한다.

제27조 (議決除斥 事由) 이사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의 就任 및 解任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金錢 및 財産의 收受를 隨伴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相反될 때

제28조 (會期) 정기 이사회회의는 매년 1회 이를 開催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隨時 이사회회의를 開催한다.

제29조 (이사회회의 召集) ① 이사회회의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이사회회의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目的을 明示하여 각 이사회회의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會하고, 또 그 全員이 이사회회의의 開會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이사회회의 召集의 特例) ① 이사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召集 要求日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회의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로부터 회의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제 24조 제 4호의 規程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회의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회의 召集이 不可能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이사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의 運營은 出席理事중 年長者의 司會 아래 그 회의의 議長을 選出하여야 한다.

제31조 (書面決議 禁止) 이사회의 의사는 書面 決議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2조 (定款의 變更) 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분의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解散)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殘餘財産의 歸屬)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敎育廳에 歸屬된다.

제35조 (施行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議決을 거쳐 細則으로 정한다.

제36조 (公告事項 및 方法) 법령의 규정에 의한 事項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신문에 公告하여 행한다.

1. 법인의 名稱 및 事務所의 所在地 변경

제37조 (設立 當初의 任員 및 任期) 이 법인 設立 當初의 任員 및 任期는 다음과 같다.

부 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